

# 학생상담센터운영규정

제정 2009.04.06. 1차 개정 2019.06.01.  
2차 개정 2022.02.28

**제1조(명칭)** 본 센터는 우송정보대학 학생상담센터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.)라 칭하고 우송정보대학 내에 둔다. <개정 2022.2.28.>

**제2조(목적)** 본 센터는 학생들의 심리, 정서적 문제 조기 해결과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및 학생들의 전문적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.

**제3조(사업)** ①센터내에 연구부와 상담부를 둘 수 있다.

②연구부는 학생지도 및 학생 생활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.

③상담부는 진로 및 학생생활상담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을 권장한다.

**제4조(조직구성)** 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업무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직원이나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별도의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상담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<개정 2019.6.1.>

**제5조(임명)** ①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상담원 및 연구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6조(직무)**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상담원은 학생들의 상담과 각종 검사를 담당한다.

③연구원은 제3조에 규정된 사업 및 연구에 임한다.

**제7조(특수강좌)** ①센터는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 <개정 2019.6.1.>

②제1항의 특수강좌 개설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8조(운영위원회)**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.)를 둔다.

**제9조(조직)**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**제10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

2. 센터 제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1조(회의)**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